

소 장

원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선조때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의 산동, 하제, 신하제, 난산, 송촌, 장원, 신장원, 같은 면 옥봉리 남수라 등의 마을(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합니다.) 주민들로서 별표 1.기재와 같이 현 거주지역 내에서 수 십년간 어업이나 농업, 기타 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 미군비행장의 설치

가. 현재 이 사건 지역의 서쪽과 남쪽은 해안에 접하고 있는 바, 바다와 이 사건 지역의 한 가운데에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의 미공군비행장(이하 이 사건 공군비행장이라 합니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공군비행장은 면적이 약 2,200,000평으로 미군 800여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속과 한국인 근무자를 합하면 약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공군비행장은 미군이 일제시대의 일본 전투비행기지를 접수하여 주둔한 이래 F5, F16 등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갖추고 있으며 두 개의 F-16전투부대로 이루어진 미공군비행장으로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지 안에는 2개의 활주로와 격납고, 탄약고 등이 있으며 주 활주로는 하제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남북방향으로 약 2.75km 뻗어 있습니다.

다. 위 공군비행장은 현재 군산민간공항이 들어서 있으며, 하루에 5회의 운항을 하다가 현재는 1회로 감소하여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3. 전투기로 인한 소음의 발생

이 사건 공군 비행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용기인 전투비행기의 훈련을 위해 하루에도 수 십 차례의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군용기의 운항 특성상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며, 훈련방법 또한 조종사의 의지에 따라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비행기는 F-16과 F-5의 패턴이 유사하지만 고공선회와 TGO(TOUCH & GO - 지상에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훈련(급강하 및 급상승))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군비행장의 특성상 일반 비행장과 달리 일정한 운행횟수를 원고들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2000. 1.경 군산시가 이 사건 공군 비행장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군산 비행장 비행기소음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합니다.)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83쪽 참조)

즉, 당시 전투기 운항 횟수는 연구상의 일정지점에서 F - 16 전투기와 F - 5 전투기의 경우 이륙, 착륙, TGO가 약 29회, 21회, 42회, 89회, 11회, 2회, 4회로 합계 약 201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항기가 하루에 5회의 운항을 하였었고 최근에는 1회의 운항으로 일정하게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간동안의 선정된 지점에서의 측정된 평균소음은 3곳의 고정지점에서는 77.4, 87.2, 104.8(각 단위 dB), 이동지점에서의 평균소음은 91.2, 87.7, 81.3, 82.4, 76.3, 77.1, 83.4, 88.5, 89.3(각 단위 dB)이고,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Level)값은 고정지점이 94.7, 91.4, 82이고 이동지점에서는 81.3, 77.7, 69.8, 72.7, 65.3, 65.7, 76.1, 81.6, 82.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지점별 평균소음과 WECPNL 값>

위와 같은 전투기와 일반 민항기의 운행에 따른 소음 등고선을 작성한 결과는 별지 지도와 같습니다. (보고서 147 - 150쪽 참조)

위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위와 같은 평균소음값과 소음등고선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비행기의 선회와 기타 예측 불가능한 소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의 소음의 정도는 그 이상이라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손해발생

가.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

1)청력손실

원고들은 수 십년동안 굉음에 가까운 전투기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오는 동안 난청, 이명 등의 질병이나 청력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군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비행장 인접지역 대상자와 주변지역 대상자로 나누어 평가하였음)으로 실시한 청력손실치에 대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기도에서의 순음 청력검사로 측정된 4분법에 의한 청력 손실치(500, 1000, 2000, 4000 Hz의 청력손실치의 평균)는 전체 대상자는 30.9dB이었으며, 비교적 높은 비행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인접지역 대상자는 35.4dB,의 청력손실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각 주파수별 청력 손실 정도를 보면 두 지역 모두에서 회화 음역인 저음(저주파)영역에서부터 청력손실이 나타나 고음(고주파)영역으로 갈수록 점차 청력손실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95쪽 참조)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난청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인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떠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도를 알아보기 위한 난청자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총 23명(47.9%)이 4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치가 25dB 이상으로 경도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4명(29.2%)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회화가 가능하나 먼 곳의 말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98쪽 참조)

2) 수면방해

이 사건 비행장은 공군비행훈련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민간공항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비행훈련이 많고 밤, 낮은 물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숙면방해의 결과로, 바다나 들판에서 힘든 육체적 일을 하여야 하는 원고들로서는 온전히 피로를 풀지 못해 피곤함에 시달려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과 빠른 어깨,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과 고혈압, 위장장애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 육아 및 교육환경의 방해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많습니다. 성장기부터 불규칙적인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깜짝 깜짝 잘 놀라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한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불안감마저 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자녀들을 등교시간이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거리인 군산시내로 전학시키기도 하였고 방과 후 학습을 위해 군산시내에 있는 독서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기타 일상생활의 방해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전투기의 소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와중에 대화를 하려고 하니 자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으로 인해 원고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로 부터 목소리가 크고 싸우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로 말을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듣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인 T. 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시 잘 들리지 않고 볼륨을 크게 하여야 하며 때론 화면이 흔들리는 등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5) 정신적 피해

원고들은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화를 잘 낸다거나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여 옴으로써 원고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문화적인 삶을 위협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법적 근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지위에과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의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 관리의 하자'라 함은 그러한 시설 등이 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자의 유무는 그러한 시설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2001. 4. 11. 선고 98가단55916 판결)

위 규정에 의하면 미군이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공군비행장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의 주민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위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음과 관련된 법적 규제, 지역성,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 사회적 평가, 사격장의 공공성,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감정 등을 통하여 소음의 정도와 그에 따른 원고들의 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진 후에야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산시가 2000. 1.경 행한 이 사건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그에 따른 주변지역인 이 사건 지역의 소음측정 및 역학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역의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가 지역에 따라 적게는 70이상, 많게는 100이상까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별지 지도 참조)

이는 항공법상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가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수립 내지 방음시설설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80이상인 경우에는 방음시설설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그 소음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공군비행장의 인접지역과 주변지역의 주민들인 48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도를 알아보기 위한 난청자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총 23명이(47.9%)이 4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치가 25dB 이상으로 경도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4명(29.2%)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회화가 가능하나 먼 곳의 말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중등도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98쪽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미공군비행장의 소음 등으로 인해 수인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생활방해를 입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지위에과한협정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